

특정감사 결과보고

- 직원음주운전 실태조사 등

☐ 감사기간

- 사전조사: 2014.01.01. ~ 02.19. (21일간)

☐ 감사인원 : 총 13명

☐ 지적사항 : 문책요구 1건, 징계요구 3건, 통보 1건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이번 감사는 전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실태 조사」로 음주운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음주운전 Zero화를 달성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일 현재 공사에 재직 중인 전 직원(본부장, 보조인력, 인턴포함)을 대상으로 2013.01.01.~2014.01.13.일을 기간적 조사범위로 정하였음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4.01.20.~02.05.(11일간) 감사분소 감사인 10인과 2014.02.06.~02.19.(10일간) 청렴윤리부 직원 3인으로 10일간 연인원 17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음

4. 감사방법 및 중점사항

- 전 직원에게 “운전경력 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음주운전 경력직원은 “음주운전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민원24를 통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조사
- 행정처분 및 교통사고 경력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 받아 음주운전 사실 확인
 - * 사건처분 결과증명서 또는 불기소 이유 통지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법원 판결문 중 1부
- 음주운전 사실관계가 확인된 관련 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문책) 처분의 적정성 확인 및 향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었음

II. 감사처분 현황

감사결과 처분요구

문 책 요 구

제 목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위반

대 상 기 관 ○○○본부 외 3개 본부

문책대상자 기술직5급 ○○○ 외 3인

문 책 종 류 훈 계

문 책 사 유

위 직원 기술직5급 ○○○ 외 3인은 2014.03.11. 현재 공사의 직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 (준수사항) 제1호 ‘성실의 의무: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2호 복종의 의무: ‘소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제1호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와 제3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의 책임) 제1항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며, 위반사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및 제8조(법규준수)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복무 기강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복무기강 특별점검 대비 철저(경영지원실-1659 / 2013.03.19.)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문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기술직5급 ○○○ 외 3인은 공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제 규정·규칙과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정기관(경찰)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바 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인사부장)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관련 직원에게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 「대한 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1항 및 제7조(품위유지), 전 직원 청렴서약 의무 불이행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3항(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의한 감사심의 조정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분상조치(문책: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위반

대 상 기 관 ○○ ○○○○○○○○○ 외 4개 본부

징계대상자 기술직4급 ○○○ 외 9인

징 계 종 류 견 책

징 계 사 유

위 직원 기술직4급 ○○○ 외 9인은 2014.3.11. 현재 공사의 직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 (준수사항) 제1호 ‘성실의 의무: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2호 복종의 의무: ‘소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제1호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와 제3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의 책임) 제1항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며, 위반사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및 제8조(법규준수)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복무 기강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복무기강 특별점검 대비 철저(경영지원실-1659 / 2013.03.19.)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문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기술직4급 ○○○ 외 9인은 공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제 규정·규칙과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정기관(경찰)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 등을 1회 받은바 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인사부장)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관련 직원에게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 「대한지적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1항 및 제7조(품위유지), 전 직원 청렴서약 의무 불이행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3항(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의한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분상조치(경징계: 전책)**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위반
대 상 기 관 ○○○본부 외 4개 본부
징계대상자 기술직5급 ○○○ 외 4인
징 계 종 류 감봉1월
징 계 사 유

위 직원 기술직5급 ○○○ 외 4인은 2014.3.11. 현재 공사의 직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 (준수사항) 제1호 ‘성실의 의무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2호 복종의 의무: ‘소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제1호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와 제3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의 책임) 제1항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며, 위반사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및 제8조(법규준수)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복무 기강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복무기강 특별점검 대비 철저(경영지원실-1659 / 2013.03.19.)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문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기술직5급 ○○○ 외 4인은 공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제 규정·규칙과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정기관(경찰)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물적 피해 등을 일으킨바 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인사부장)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관련 직원에게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 「대한 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1항 및 제7조(품위유지), 전 직원 청렴서약 의무 불이행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3항(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의한 감사심의 조정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분상조치(경징계: 감봉1월)**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위반
대 상 기 관 ○○○○본부 ○○○○지사
징계대상자 기술직4급 ○○○
징 계 종 류 정직3월
징 계 사 유

위 직원 기술직4급 ○○○은 2014.3.11. 현재 공사의 직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 (준수사항) 제1호 ‘성실의 의무: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2호 복종의 의무: ‘소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호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와 제3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의 책임) 제1항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며, 위반사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및 제8조(법규준수)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1항 <별표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종류 중 제3항 “성실·복종의무의 위반_가항 복무, 질서의 문란 중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라 항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술직4급 ○○○은 공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제 규정·규칙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관련 서류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도 강력하게 거부하는 등 공사의 공직기강 확립 저해와 감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인사부장)은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제2호(복종의 의무), 제3조(윤리강령)와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8조(법규준수) 및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1항<별표 1>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및 감사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분상조치(중징계: 정직3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직원 복무관리 철저

대 상 기 관 경영지원실

내 용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의 책임) 제1항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며, 위반사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및 제8조(법규준수)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복무 기강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복무기강 특별점검 대비 철저(경영지원실-1659 / 2013.03.19.)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문서를 시행한 바 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는 물론 타인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직원 음주운전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사정기관(경찰)로부터 단속·처벌된 직원들이 조사되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와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사장(경영지원실장)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관련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본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교육 등 특단의 조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음주운전 Zero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